

출처: 주동황 외, <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4년.

<표6> 직권중재제도의 효력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일반시민	언론인
현상태가 적당하다	47.5	76.5
직권중재권을 강화해야한다	52.5	23.0
기타	-	0.5

출처: 주동황 외, <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4년.

한편 신청인들의 70% 이상이 향후 다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언론중재위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소송제기 외에는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중재제도는 국민들이 언론피해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언론피해에 대한 향후 대응 (단위: %)

대응방법	신청인
중재위에 반론보도청구	71.8
법원에 소송제기	14.5
해당매체에 적극항의	7.3
다른 상담기관 이용	1.8
대응하지 않겠다	1.8
기타	2.7
무응답	-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7. 마치며

새로이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과거 정간법과 방송법에 담겨있던 언론중재 관련 조항들을 정비해 언론중재제도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했고, 혼란스러웠던 용어를 정비하고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손해배상을 중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언론중재제도의 중재권한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중재위의 기능에 새로이 포함되었거나 대폭 강화된 제도, 즉 중재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 기능을 강화시키고, 조정이나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 소제기로 간주하는 제도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에게 언론중재제도를 보다 적극 홍보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언론계에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게 함으로써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제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새로운 언론중재법 제정을 계기로, 언론계 스스로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언론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개인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끝)

참고문헌

강경근, “언론관계법 개정의 방향: 언론발전론과 언론개혁론”, 한국언론법학회 제9회 세미나 발제문, 2004년 12월 9일

김종천, “언론피해구제법,” <언론개혁입법의 주요 쟁점>, 전국언론노동조합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년 12월 16일.

문재완,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 <언론개혁 입법의 주요 쟁점>, 한국헌법학회, 2004년 12월 15일

안상운, “언론의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언론피해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언론인권센터, 2003년 9월 4일

양경승,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언론중재>, 2004년 가을호, 5-19.

양삼승,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2000년 겨울호, 34-54.

양삼승,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언론중재>, 2003년 가을호,

27-42.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까지 연도별 중재신청 처리현황 및 시정권고 현황,”
http://www.pac.or.kr/press/data/data_view.asp?seqid=65&num=6&page=1&cur_pack=0&s_field=&s_string=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언론중재>, 2004년 겨울호, 64-75.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2005년 2월.

유일상, “언론피해구제법안 왜 문제인가,” <언론피해구제법안 문제점과 과제>, 한국방송협회. 2004년 12월 10일

유지태,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과 발전 방향,” <언론중재>, 2004년 가을호, 20-34.

이강택.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에 대한 현업언론인들의 견해”, <언론개혁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언론개혁국민행동, 2004년 08월 10일

이신,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언론피해구제법안 문제점과 과제>, 한국방송협회. 2004년 12월 10일

이용성, “언론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모색: 언론중재위원회 강화론을 중심으로,” <언론피해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언론인권센터, 2003년 9월 4일

이재진, 유재웅, “언론중재제도의 조정전치 기능에 대한 재고찰: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효율성 관점에서,”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2004년 4월), 267-293.

조수정, “언론중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워크숍 발표논문, 2004년 12월 6일.

주동황 외, <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 2004년, 한국언론재단.

언론개혁국민행동 외, “언론피해구제법(안) 제정 입법청원서,” 2004년 9월 21일.